

보도자료

2010년 6월 14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의결안건]
가. 지상파방송정책과 이영미과장(2430)
[보고안건]
가. 방송정책기획과 이상학과장(2410)

2010년 제36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

□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

[의결안건]

가. 2010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(안)에 관한 건(별도 보도자료 참조)

- '10년 12월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43개사(330개 방송국)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(안)을 심의하여 의결함
- '10. 12.31. 허가유효기간 만료 : 총 42개 사업자, 328개 방송국
- '10. 12. 6. 허가유효기간 만료 : OBS 경인TV(주), 2개 방송국

[보고안건]

가. 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(첨부 참조)

- 방송사업의 소유·경영 개선 및 시청점유율 제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('09. 7.31)에 따라 마련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함

[첨부]

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

2010. 6.

I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배경

□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배경

- 방송산업의 칸막이 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사업 소유·경영 규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('09. 7.31)
 -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, 시청점유율 초과(30%) 사업자에 대한 사후 규제는 '10. 8. 1.부터 시행토록 하여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이 필요
- 방송광고 및 편성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방송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,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

II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한 기준 마련

□ 개정 사유

- 방송법 제69조의2에서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과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등을 규정하고, 구체적인 기준·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

□ 개정 내용

- (신문구독률 환산)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시, 일간신문과 텔레비전 방송의 매체특성, 이용현황 및 시장규모 등을 고려 요소로 규정
 - 일간신문의 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소유정도에 따라 시청점유율 합산 반영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세부 환산기준·방법은 고시로 위임

- (시청점유율 산정기준·방법 등)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기준·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

① (산정 대상기간) 시청점유율은 산정하고자 하는 해의 직전년도 연간을 기준(신문구독률 기준과 통일)으로, 매년 6월말까지 산정

※ 허가(승인) 등의 심사 또는 사후규제에 따른 개선여부 확인 등 방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산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② (가중치) 특수관계자와 非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합산 시 가중치의 기준을 규정

※ 특수관계자 시청점유율은 100% 합산하고,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(지분)을 소유한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주식(지분) 소유비율을 곱하여 합산

③ (고시위임) 기타 시청점유율 조사·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·방법·절차 등은 고시로 위임

④ 기타 시청점유율 조사 시 고려요소(표본 대표성, 조사방법 신뢰성 등), 방송사업자 자료제출 의무,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근거 마련 등

Ⅲ 시청점유율 초과사업자에 대한 사후 규제 마련

□ 개정 사유

- 방송법 제69조의2제5항에서 시청점유율 초과(30%) 사업자에 대해 방송사업 소유제한, 방송광고시간 제한, 방송시간 양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

□ 개정 내용

- (방송사업 소유제한) 소유제한 유형은 ①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② 당해 방송사업자의 자산 매각 ③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 금지 ④ 새로운 방송사업자의 설립에의 참여 금지 조치로 함
 - 주식 또는 지분이나 자산 매각 조치의 경우 시청점유율 초과 사업자는 시청점유율 초과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주식 또는 지분이나 자산을 매각하여야 함
 - 소유제한 조치의 이행을 위한 기간은 6개월 범위 내로 하되,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
- (방송광고시간 제한) 시청점유율 30%에서 1%를 초과한 사업자가 얻은 광고수익의 30분의 1은 법 위반으로 인한 수입이므로,
 - 법 위반으로 얻은 수익을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시청점유율 1% 초과 당 1/30의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
 - ① 1개월은 30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시청점유율 1% 초과 당 매월 하루 씩 주 채널에서 방송광고를 금지
 - ② 다만, 방송광고가 제한되면 방송편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제한되는 방송광고 시간에 공익광고는 허용
- (방송시간 양도) ① 시청점유율 30%에서 1% 초과 당 방송사업자의 주 채널에서 주 시청시간 방송시간의 1/30을 양도 하도록 함
 - ② 방송시간 양도 조치 기간은 6~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정함
 - ③ 방통위는 방송프로그램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시간 양도 계약을 체결할 협상 대상자를 2이상 선정하고,

- 시청점유율 초과사업자는 협상대상자와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

④ 방송시간을 양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TV PP로 하고, 시청점유율 초과사업자의 특수관계자는 방송시간을 양도 받을 수 없도록 함

IV 방송광고 규제 개선 및 법적 미비 사항 보완

□ 개정 사유

- 방송광고 및 편성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고, 법적 미비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

□ 개정 내용

- (광고 및 편성 규제 개선) 중간·토막광고에서 광고 시간과 건수를 동시에 규제하던 것을 건수 규제를 삭제하고 광고 시간만 규제
 - 외주제작 편성비율 준수 기준과 1개 국가 외국제작물의 편성비율 기준을 '분기'에서 '반기'로 확대
- (법적 미비사항 보완) 소속기관에 편성규제 및 방송광고 규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
 - 장르분류의 기준, 편성시간의 산정방식 등을 고시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
 - 법에서 전송망사업자의 약관신고와 관련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시로 정하고 있어 주요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